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 - 951호

「하천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에 따라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1. 19.

전주시 완산구청장 

1. 공 고 명 : 「하천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11. 19. ~ 2026. 12. 2. 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공시송달 대상 : 붙임 참조
5. 공시송달 내용
   가. 「하천법」제33조를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오니, 2026. 12. 2.(수)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, 그 결과 (사진 등)를 전주시 덕진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나. 위 기한 내에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,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, 제3조에 따라 우리 구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.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7. 기타 문의사항은 덕진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(☎063-220-5268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고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